

# 환매 공고문(공시송달)

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1-84호

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“동두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(상패-청산, 연천군 구간)”에 편입된 토지 중 ‘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산91-5번지(임야, 1필지 2,329㎡, 지분소유자 66명)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2조(환매권의 통지 등)에 따라 토지 지분소유자에게 환매 통지 하였으나, 일부 소유자가 거소 불명 등으로 통지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(환매의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매 공고하오니, 해당 소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 시행자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)

2. 사업의 명칭 : 동두천시 관내 우회도로 건설공사(상패-청산, 연천군구간)

3. 기간 및 장소

가. 기 간 : 공고기간(2021. 7. 5. ~ 2021. 7. 14.)

나. 장 소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(☎ 02-2110-6762, 김정만 주무관)

4. 환매방법 및 절차

가. 해당 토지의 지분소유자중 환매의사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, 지분소유자에게 환매

나. 환매 토지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환매대금을 납부(납입고지서 발부)후 “국”에서 해당 “지분소유자의 명의”로 변경

5. 토지 및 물건의 표시 : 붙임내역 참조

※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2조(환매권의 통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(환매의 공고)에 따라 통지 및 공고 이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: 환매대상목록 1부.

2021. 7. 2.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